

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 : 김기덕 의원 외 16명
- 나. 의안번호 : 제2821호
- 다. 발의일자 : 2021. 10. 15
- 라. 회부일자 : 2021. 10. 20

2. 제 안 사 유

- 병물 아리수 생산 시 일회용 페트병의 사용제한과 아리수 음수대를 통한 수돗물의 음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생활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병물 아리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”로 개정함
- 나. 병물 아리수의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제1호의2)
- 다. 음수대의 설치·보급 및 음용을 촉진하고 병물 아리수의 공급 및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는 내용을 신설함(안 제3조제2항)

라. 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 중 제10조에 따른 병물 아리수의 사용 제한에
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4조제2항제3호)

마. 병물 아리수의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(안 제10조)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병물 아리수의 사용 제한과 아리수 음수대를 통한 수도물 음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상수도사업본부는 2018년 9월에 발표된 「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」에 따라 2019년부터 병물 아리수 공급처를 단수 대응 및 재난 구호용으로 한정하여 공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간 생산량을 50만병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있음.

연도	2017년	⇒	2018년	⇒	2019년 ~
생산·공급량	602만병		250만병		50만병 ¹⁾

- 동 조례안은 병물 아리수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음.

다만, 현재도 본부장 방침에 따라 병물 아리수를 단수 대응 및 재난 구호용으로 한정하여 공급하고 있는 바, 병물 아리수 ‘사용 제한’ 보다는 ‘공급 대상 규정’으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²⁾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, 안 제3조제2항의 일부 내용은 안 제10조와 중복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.

1)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생활치료센터내 보급을 위해 80만병 생산

2) 제명, 안 제1조, 제4조, 제10조

- 또한, 안 제3조제2항에서는 ‘학교 및 공공기관 음수대 설치·보급, 수돗물 음용 촉진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, 2021년 현재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22,866대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후 신규 설치보다는 유지관리³⁾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 이외에 별도의 음수대 설치·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며, ‘수돗물 음용 촉진’의 경우 강제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동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3)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에 따른 교체 이외에 연간 약 28억원 유지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.